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
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안규백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정과제와 관련 법률(「국방개혁에 관한 법률」) 및 시행령(「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)과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,

급변하는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여 민·군 협업 및 범 부처 차원의 국방개혁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·조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법령 제명 변경 및 용어 통일 (법령 제명, 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3조제3항제4호)

- 1) 법령 제명을 ‘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’에서 ‘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’으로 변경
- 2) 관련 법률 및 시행령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‘국방혁신’을 ‘국방개혁’으로 변경

나. 위원회의 구성 변경(안 제3조) 및 위원장의 직무 추가(안 제6조)

- 1) 광범위한 국방개혁 업무(군 구조, 국방운영, 병영문화)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적위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, 국가안

보실 제1차장을 재적위원으로 지정

2)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지정하고, 위원장

직무수행 불가 시 직무 대행자 지정

3) 간사를 간사위원으로 변경하고, 국가안보실 조직개편에 따라 간사

위원을 ‘국가안보실 제2차장’에서 ‘국가안보실 제1차장’으로 변경

다.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도입(안 제8조)

1)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

을 도입하고, 분과위원장을 지정

라. 위원회의 유효기간 연장(안 부칙 제2조)

1) 국방개혁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‘시

행일(2022.12.14.)로부터 4년’에서 ‘2030년 7월 31일’로 연장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0. 1. ~ 11. 1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”을 “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국방혁신의”를 “국방개혁의”로, “국방혁신위원회”를 “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국방혁신위원회의 기능)”을 “(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국방혁신을”을 “국방개혁을”로, “국방혁신위원회”를 “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“국방혁신”을 각각 “국방개혁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”으로, “11명”을 “1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제3호”를 “제4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

항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국방혁신”을 “국방개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간사 1명”을 “간사위원 1명”으로, “간사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”을 “간사위원은 제3항제3호의 위원”으로 한다.

3. 국가안보실 제1차장

제6조제2항 중 “위원장이 지명한 위원”을 “부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분과위원회 등) ①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3조제3항제4호의 위원 중 1명을 선정하고, 그 외 제3조제3항제4호의 위원은 분과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④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영은 2030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</u>	<u>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</u>
제1조(목적) 이 영은 인공지능 등 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<u>국방혁신의</u> 성공적인 추진을 위 해 <u>국방혁신위원회</u>를 구성·운 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<u>국방혁신위원회의 기능</u>) ① 대통령은 <u>국방혁신</u>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 으로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<u>국방혁신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 할 수 있다.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·조정한다. 1. <u>국방혁신</u>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. <u>국방혁신</u> 추진실적 및 향후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국방개혁의</u> ----- -- <u>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 원회</u>----- ----- -----. 제2조(<u>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 위원회의 기능</u>) ① ----- ----- <u>국방개혁을</u> ----- ----- ----- <u>대통령직속 미래국방 전략위원회</u>----- -----. ② ----- -----. 1. <u>국방개혁</u> ----- -- 2. <u>국방개혁</u> -----

계획에 관한 사항	-----
3. <u>국방혁신</u>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 항	3. <u>국방개혁</u> ----- ----- --
4. <u>국방혁신</u> 추진을 위한 민· 관·군 협업에 관한 사항	4. <u>국방개혁</u> ----- -----
5. <u>국방혁신</u> 추진을 위한 법령 의 제정·개정, 제도의 개선,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	5. <u>국방개혁</u> ----- ----- -----
6. 그 밖에 <u>국방혁신</u> 에 관한 사 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(이 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심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6. ----- <u>국방개혁</u> ----- ----- ----- -----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 는 <u>위원장</u> 1명을 포함하여 <u>11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 <u>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</u> --- ----- <u>15명</u> -----.
<u>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.</u>	<u>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, 부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</u>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<u>제3호</u> 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을 고려해야 한다.	③ ----- -----, ----- <u>제4호</u> 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3. 국방혁신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

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신 설>

3. 국가안보실 제1차장

4. 국방개혁-----

--

④ -----
---- 간사위원 1명---- 간사
위원은 제3항제3호의 위원--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부위원장-----

-----.

제8조(분과위원회 등) ①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3조제3항제4호의 위원 중 1명을 선정하고, 그 외 제3조제3항제4호의 위원은 분과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

	<u>문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④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
<u>제8조 ~ 제10조 (생략)</u>	<u>제9조 ~ 제11조 (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)</u>
대통령령 제33075호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	대통령령 제33075호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
제2조(유효기간) 이 영은 <u>이 영 시</u> <u>행일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</u> 효 력을 가진다.	제2조(유효기간) ----- <u>2030년 7</u> <u>월 31일</u>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국방혁신담당관	
연 락 처	(02) 748 - 6432